| 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 | 보도참고자료 | 보다 나은 정부 |
|---|---|---|

**배포즉시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배포일시 | 2019. 2.9.(토) | 담당부서 | 통상분쟁대응과 |
|---|---|---|---|
| 담당과장 | 정하늘 과장<br>(044-203-4880) | 담 당 자 | 장재량 수석전문관<br>(044-203-4881) |

# 세계무역기구(WTO) 한미 세탁기 분쟁 (DS464) 대미(對美) 양허정지 수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중재판정 결과 발표

□ 2.9.(토) 새벽(한국시간), 세계무역기구(WTO)는 한미 세계무역기구 세탁기 분쟁(DS464) 관련,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재판정 결과를 회원국에 회람했다.

○ 지난 2016년 9월에 확정된 상소심 판정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했으나, 미국이 기한 내에('17.12.26.) 판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며,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'18.1월 세계무역기구에 미국에 대한 양허 정지를 신청했었다.

* 우리측의 신청 수준에 대한 미국측의 이의제기로, 신청 수준의 타당성을 판정하는 WTO 중재재판에 회부('18.1)

□ 중재 재판부는, 미국의 해당 세계무역기구(WTO) 판정 불이행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미 세탁기 수출에 있어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, 즉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상한액을 연간 8,481만 달러(약 953억원, 2019.2.7일 기준) 수준으로 판정했다.

* 동 금액은 2017년 기준으로서, 실제 양허정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그간의 인플레이션율을 가산할 수 있도록 판정

○ 또한 중재 재판부는 이 금액에 더해, 향후 미국이 문제된 반덤핑 조사기법을 수정하지 않고 세탁기 이외의 여타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적용하는 경우, 해당 수출규모, 관세율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인정했다.

□ 정부는 업계 등과 협의해 세계무역기구(WTO) 협정에 따른 향후 절차를 검토, 추진하기로 했다.

붙임:

1. WTO 한미 세탁기 분쟁 개요
2. WTO 한미 세탁기 분쟁 주요 판정결과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통상분쟁대응과 장재량 수석전문관(☎ 044-203-488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## 붙임 1 WTO 한-미 세탁기 분쟁 경과

□ ('13.1월) **미국측의 반덤핑/상계관세 부과**

* (삼성) 반덤핑 9.29%, 상계관세 1.85%, (LG) 반덤핑 13.02%

□ ('13.8월) **우리측 제소**(양자협의 요청)

□ ('16.1월) **패널판정 발표**(우리측 승소)

□ ('16.9월) **상소판정 채택**(우리측 승소)

□ ('17.4월) **WTO, 미국측의 이행기간 결정**(15개월, '16.9월~'17.12월)

□ ('17.12월) 미국측 **이행기한 도과** (미이행)

□ ('18.1월) 우리측, **WTO에 대미 양허정지 요청**

□ ('18.2월~'19.2월) **양허정지 중재 재판**

- 미국측이 우리측 제시 양허정지 수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, 동 수준의 타당성을 다투는 중재재판에 회부

□ ('19.2.8) **양허정지 중재 재판 결과 회람** (대외공개)

**붙임 2** **WTO 한-미 세탁기 분쟁 주요 판정 결과**

| 구분 | | 쟁점 | 상소 (16.9) | 패널 (16.3) |
|---|---|---|---|---|
| 반덤핑 | 표적 덤핑 | - **표적덤핑 판단기준**: 미측의 표적덤핑 판단 기법이 반덤핑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| 승소 | 승소 |
| | | - **설명의무:** 미측이 통상적인 가격비교방법(평균-평균, 거래-거래)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 | 승소 | 승소 |
| | 제로잉 | - **제로잉 허용 여부**: 표적덤핑이 인정될 경우 제로잉 가능여부 | 승소 | 승소 |
| | | - 평균-거래 **비교방법의 적용범위**: 표적덤핑된 거래뿐 아니라 조사대상 거래 전체에 W-T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| 승소 | 승소 |
| | | - 표적덤핑된 거래와 기타 거래군의 덤핑 마진 합산시 제로잉 적용가능성(Systemic disregarding) | 승소 | 패소 |
| 보조금 | 특정성 | - **사실상 특정성** : 삼성에 대한 세액공제(보조금)의 절대액이 크다는 점으로 동 보조금에 사실상 특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| 승소 | 승소 |
| | | - **지역적 특정성**: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(전체 국토의 98%)에 투자시 세액공제를 제공한 것에 특정성 인정여부 | 패소 | 패소 |
| | 보조금 계산 방식 | - Tying: 세탁기에 지원된 금액이 아닌 삼성전자 전체에 지원된 금액으로 보조금 비율을 계산한 점이 보조금협정을 위배했는지 여부 | 승소 | 패소 |
| | | - **해외매출액 포함 여부**: 보조금 비율 계산시 삼성의 해외매출액을 제외한 점이 보조금협정을 위배했는지 여부 | 승소 | 패소 |